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62
----------	-------

발의연월일 : 2025. 9. 22.

발 의 자 : 김미애 · 김기현 · 유용원
박상웅 · 김민전 · 추경호
구자근 · 성일종 · 이달희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찰서장 소속으로 두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축소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경찰관서의 신설·폐지 등이 지역별 범죄 발생률 등 실질적인 치안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경찰관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찰관서의 지구대 등이 대폭 축소·폐지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2(치안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등 경찰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지역별로 인구구성 특성, 사회적 약자 규모 및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등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치안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의 소속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치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치안실태조사의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치안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치안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지역별로 인구구성 특성, 사회적약자 규모 및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등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치안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의 소속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치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 <u>③ 경찰청장은 치안실태조사의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u> <u>④ 치안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